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 회의자료



검찰

PROSECUTION SERVICE

2014. 9. 18.(목)

---

대검찰청 형사부

# 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

2014.9.18. 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

## 1. 필요성

- 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글·사진·동영상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
- 전파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파악하여 차단하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

## 2.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

- 서울중앙지검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 과 포털사 간에 '핫라인' 구축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모욕 여부 등 법리판단을 신속히 하여 포털사에 삭제 요청

## 3.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전담 IT수사관 배치),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겟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여 실시간 적발, 증거 수집

※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불법개인정보 판매상 단속에도 활용

-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조기에 유언비어·명예훼손 사범 적발



# 사이트 및 게시물 차단관련 기관 파악

2014. 9.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

## 1 개요

- 우리 단은 온라인상 불법 행위가 있는 사이트, 게시물의 삭제·차단 업무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관련기관의 업무 파악이 필요
  - 불법정보의 심의 후 삭제·차단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두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함

## 2 내용

-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유형 분류에 따라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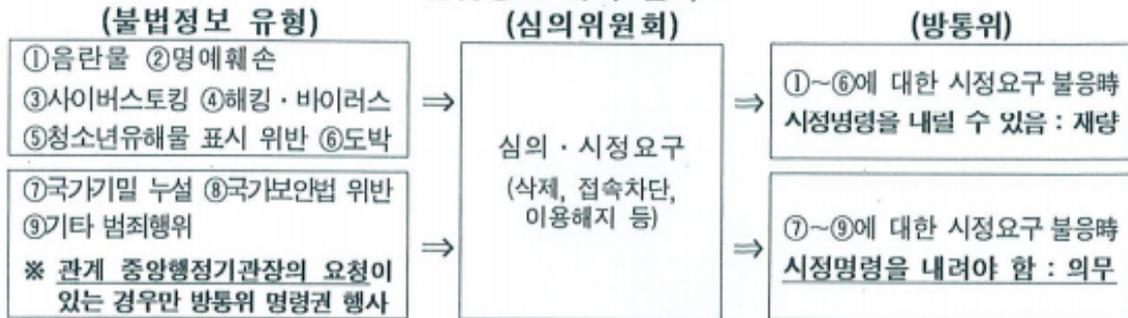
◇ 불법정보 유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①음란 ②명예훼손 ③공포·불안 유발 ④해킹·바이러스 유포 ⑤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⑥도박 등 사행행위 ⑦국가기밀 누설 ⑧국가보안법 위반 ⑨기타 범죄행위 및 범죄교사행위

※방심위의 시정요구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①~⑥은 방통위가 재량으로 시정 명령할 수 있으나 ⑦~⑨의 경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 기관이 해당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방통위에 요청해야 함

※이외에 '청소년유해정보'(불건전정보) 포함

- 위 ④해킹·바이러스 유포를 제외한 ① ~ ⑨번은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④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성 및 건전성 판단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시정요구
  - 통신심의 절차 : 심의대상접수 - 담당자별 확인·검토 - 통신심의 소위원회 상정 - 심의결정 통보 (※ 참고1. 통신심의 세부 절차 참고)

**< 불법정보 처리 절차 >**



- 감경 수사기관은 긴급처리를 위하여 행정명령(제제조치) 단계가 아닌, 심의위 시정요구 단계에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직접 공문으로 요청함
- 통신심의 관련 부서별 업무 (공문 송신처 확인)

부서명	분장업무
통신심의 기획팀	· 심의총괄(통신심의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등) · 심의제도 개선(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제·개정) · 통신민원 및 통계관리 총괄
불법정보 심의팀	· 도박 등 사행성 정보, 식품위생법 위반, 자살, 문서위조 등 불법정보
유해정보 심의팀	· 노출, 성행위 등 음란·선정성 정보 · 욕설 등 저속한 언어정보 등 · 인터넷 성인사이트, 화상채팅 등 · 해외 음란 등 불법정보
권리침해 정보심의팀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정보 ·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정보
뉴미디어정보심의팀	·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불법정보, 인터넷광고 심의지원 (뉴미디어 매체분야 도박, 음란 등 불법정보)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바이러스 등의 급속한 전파로 인한 컴퓨터 사용자들의 광범위한 피해를 신속히 줄이기 위해 자체 판단을 통해 악성 사이트(아이피) 들을 차단 (참고2. 악성사이트 차단 절차)

# 허위사실 유포 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

'14. 9. 18.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1 검토 배경

-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포털사이트·메신저·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사범이 지속 증가 추세

※ 명예훼손 사건 연도별 전국청 처리 인원(단위 : 명)<sup>1)</sup>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8)
명예훼손	8,314	9,887	10,866	10,186	10,141	10,558	10,881	11,759	14,097	12,991	7,835
사자명예훼손	31	60	59	40	38	48	46	62	62	60	59
출판물등에 의한명예훼손	951	954	1,029	1,039	893	798	789	719	703	745	698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1,257	2,058	3,132	3,687	2,939	4,016	4,278	4,505	5,645	7,169	4,297
합 계	10,553	12,959	15,086	14,952	14,011	15,420	15,994	17,045	20,507	20,965	12,889

- 근거없는 의혹과 루머로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한편,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침해도 심각한 수준

### ※ 9. 16.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걸잡을 수 없게 됩니다”

- 이에 검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팀」의 활동 강화, 적극적 구공판, 중요사건 직접수사 확대, 철저한 유포자 추적·검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1)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사범은 2.0배 증가,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사범은 5.7배 증가하였으며 기소한 명예훼손사범(31,672명) 중 구공판은 9.3%(2,941명), 구약식은 90.7%(28,731명)임

## ② 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조항

### 【형법】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훼손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신용훼손」·「업무방해」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용훼손, 업무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모욕」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훼손
- 「불안감 조성 글·사진 등 반복 전송」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 통신」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제47조 제2항)

#### ※ 단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12. 12. 28. 속칭 ‘미네르바’ 사건) 됨으로써, 현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단,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③ 중점 수사 대상

-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 등
- 경쟁 기업에 대한 음해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등
- 기타 피해 중대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높은 주요 명예훼손 등 사건

#### 《 최근 주요 수사 사례 》

- ▶ “세월호에 산 사람은 없고, 시체가 득실거리나 현장책임자가 수습을 못하게 한다”는 허위 글 게시(구속기소, 징역 1년 실행 선고)
- ▶ “세월호 내 단원고 학생들, 여교사들이 죽음 직전 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구속기소)
- ▶ “해양경찰청장 및 현장구조대원들이 생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MBN 뉴스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구속기소)
- ▶ 국회의원이 방송과 신문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비선라인인 ‘만만회’각 인사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만났다”는 허위 발언(불구속 기소)
- ▶ “뽕 섹스 화냥년 죽을 날 멀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게시(불구속 기소)

#### 4 대응 방안

##### ○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활동 강화

- '14. 8. 6.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투입하여 강화

※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로 구성

- 팀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

##### ○ 처벌 기준 강화, 구공판 적극 확대

- 2014.초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하여 약식 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 중 (2013년 구공판을 8.0%에서 2014. 8. 기준 11.5.%로 상승)
-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사범도 피해 중한 경우 원칙적 구공판

##### 구속 기준(2013. 7. 대검 형사1과, 명예훼손사범 엄정 처리 방안)

- 사실 정보지(속칭 '짜라시') 등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이나 영업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유포
-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
-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사실 적시도 포함)로 인하여 인격이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 단발적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음해성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가 쌓아온 사회적 신뢰에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손상을 입힌 경우
-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그 목적, 범행방법,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 고려

○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확대

- 국론분열 및 사회혼란을 초래하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주요 명예 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여 신속한 진상 규명 및 피해회복 도모

○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검거

-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개인정보 수집 축소 등에 따라 최초 유포자 및 전달자 검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상
-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IP 추적기술 등 전문 과학수사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최초 유포자 등을 철저히 추적

○ 유관기관 협조 체제 강화

- 검·경,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하여 유포자 및 전달자의 추적 가능 범위 확대, 새롭고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등 강구 노력